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여객기에서 여성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몽골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배제된다.
- ②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등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 ④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2. 다음 중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하나의 문서로 甲, 乙, 丙을 모욕한 경우, 甲이 한 A의 모욕에 대한 고소는 乙, 丙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② 조카 甲, 乙이 친구 丙과 함께 삼촌 D의 집에 놀러갔다가 D의 시계를 절취한 경우 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조카 甲, 乙에게도 미친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1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3. 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확정된 즉결심판
-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 ③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
- ④ 무죄판결

4. 다음 중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5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②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체포의 통지는 체포를 한 때로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통지할 수 있다.
- ④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는 없다.

5. A 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 D가 미성년자 납치·감금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乙을 인도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 ㉠ 2024. 9. 30. 23:00 사인 D가 현행범인 乙을 체포
- ㉡ 2024. 10. 1. 22:00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 D로부터 현행범인 乙을 인수
- ㉢ 2024. 10. 2. 16:00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 ㉣ 2024. 10. 3. 10:00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및 수사관계서류 접수
- ㉤ 2024. 10. 4. 14: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 ㉥ 2024. 10. 4. 18:00 구속영장 발부, 20: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관계서류 반환, 22:00 구속영장 집행

- ① 2024. 10. 10. 24:00
- ② 2024. 10. 11. 24:00
- ③ 2024. 10. 12. 24:00
- ④ 2024. 10. 13. 24:00

6. 다음 <보기>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문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의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 보 기 >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 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 시간이 원칙적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① 26 ② 27 ③ 28 ④ 32

7. 다음 <보기>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8. 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②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③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범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도 가능하다.

9.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
-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로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② 명예훼손죄에서 전과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③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
- ④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심신미약이었느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11.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한다.
- ② 경찰 및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의 기재는 사고 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 ③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 ④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다.

12. 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3. 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
- ③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④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 ④ 당해 사건의 피해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15.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은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으며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무죄추정이 유지된다.
- ③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16. 다음 중 공판절차와 관련한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범죄피해자 등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증거물인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④ 증인신문시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가 있다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권자는 검사만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을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경우 불복할 수 없다.

18.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9.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이다.
- ②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20.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②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
- ③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④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